



교통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6. 4.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며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영향을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물론 사업자나 심의위원회, 업무담당 공직자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법령 위주로만 접하다 보니,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편과 부담이 뒤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지연과 행정 비효율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발간하게 된 『교통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은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명확한 절차와 해설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의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이루어지며, 담당 공직자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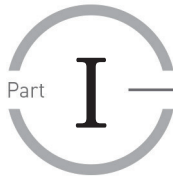
앞으로의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한 수요 예측과 관리를 넘어, 교통안전 대책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매뉴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포용적이며 발전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오승훈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장님,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님을 비롯한 교통엔지니어링 발전위원회, 김원진 교통영향평가협회장님, 그리고 자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신 보 미

Contents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1.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요	3
1.1 개념 및 법적 근거	3
1.1.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1.1.2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근거	
1.2 대상사업	3
1.3 평가 내용	4
1.4 절차	4
1.5 사후관리	4
2. 교통영향평가 제도 연혁	5
3.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6
3.1 도시교통정비지역	6
3.2 교통권역	6
4.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12
4.1 대상사업	12
4.1.1 개발사업	
4.1.2 건축물(단일용도)	
4.1.3 건축물(복합용도)	
4.2 면제 사업 등	19
4.2.1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4.2.2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는 경우 등	
4.3 준공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20
4.3.1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준공 후 확장 시	
4.3.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준공 후 용도변경 시	
4.3.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5. 교통영향평가 절차도	23



Part II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27
1.1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의무	27
1.2 대행계약의 분리	27
1.3 사업자의 준수사항	27
1.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28
2.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의 산정	30
2.1 대행비용의 산정	30
2.1.1 산정기준	
2.1.2 산정방법	
2.1.3 산정비용의 게재방법 등	
2.2 교통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공정률	33
3.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34
3.1 작성 항목	34
3.2 작성 내용	35
3.3 약식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36
3.3.1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	
3.3.2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방법과 절차	
3.3.3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교통개선대책	
3.3.4 공동주택의 약식 교통영향평가	
3.3.5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대행비용 산정	
3.4 보고서의 규격 등	39

Part III

교통영향평가의 검토와 심의

1.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과 검토	43
1.1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43
1.2 계약사항의 검토	43
1.2.1 체결 주체	
1.2.2 대행비용 수준	
1.2.3 계약 내용	

Contents

1.3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45
1.3.1 승인관청의 검토	
1.3.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	
1.3.3 검토 항목(체크리스트)	
2.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49
2.1 심의기관	49
2.1.1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1.2 상급기관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2.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1
2.2.1 위원	
2.2.2 위원장과 부위원장	
2.2.3 위원회의 운영 방법	
2.3 위원회의 개최	53
2.3.1 회의 소집	
2.3.2 개의와 의결	
2.3.3 제척, 기피, 회피	
2.4 심의 및 의결	55
2.4.1 심의의 진행	
2.4.2 심의 기준	
2.4.3 의결 방법	
2.5 심의결과의 통보 등 후속조치	59
2.5.1 심의결과의 통보	
2.5.2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보고서의 제출	
2.5.3 개선필요사항의 통보	
2.5.4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2.6 수당 등의 지급	62
3. 교통영향평가의 통합심의	63
3.1 통합심의의 의의 및 목적	63
3.2 통합심의를 규정한 법령	64
3.3 통합심의에 따른 후속 조치	65
3.3.1 심의결과의 작성	
3.3.2 심의결과의 통보	
3.3.3 통합심의 이후 교통영향평가의 변경	



Part **IV**

교통영향평가의 이행과 변경

1.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이행	69
1.1 이행의무사항의 관리(사업자)	69
1.1.1 이행의무사항의 개념과 이행 의무	
1.1.2 관리대장의 비치와 관리책임자 지정	
1.1.3 이행현황의 점검 및 보고	
1.1.4 이행의무사항의 사전 점검	
1.1.5 준공 후 이행할 이행의무사항에 대한 관리	
1.1.6 이행의무의 승계	
1.1.7 이행의무사항 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	
1.2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사업자)	72
1.2.1 작성 방법	
1.2.2 작성 내용	
1.3 이행의무사항의 확인(승인관청)	73
1.3.1 확인 시기	
1.3.2 확인 방법	
1.4 이행의무사항 미이행 시 조치(승인관청)	75
1.4.1 조치명령	
1.4.2 공사중지명령	
1.4.3 과태료 부과	
1.4.4 벌칙	
2. 교통영향평가의 변경	76
2.1 사업준공 이전	76
2.1.1 변경심의 대상	
2.1.2 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2.1.3 변경신고 대상	
2.1.4 변경신고서의 작성	
2.1.5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의 변경신고	
2.2 사업준공 이후	87
2.2.1 변경심의 대상	
2.2.2 변경신고 대상	

Contents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

1.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	93
1.1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등록(사업자)	93
1.2 사후관리 의무(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93
1.2.1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의무	
1.2.2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의 변경	
1.2.3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	
1.2.4 변경신고 수리 기준	
2.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조치	98



기타 사항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01
1.1 등록기준	101
1.1.1 일반요건	
1.1.2 세부요건	
1.1.3 결격사유	
1.2 등록(변경등록) 방법	102
1.2.1 등록(변경등록) 대상	
1.2.2 등록(변경등록) 절차	
1.2.3 신청 및 제출서류	
1.3 폐업신고	107
1.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등	107
1.4.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1.4.2 등록취소 대상	
1.4.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4.4 행정처분 시 업무의 계속 등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	112
2.1 자격인정제도의 도입	112
2.2 인정기준	112
2.3 인정(변경) 신청	114
2.3.1 인정(변경) 절차	
2.3.2 신청 및 제출서류	
2.4 인정취소 대상 등	117
2.4.1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대상	
2.4.2 인정취소 대상	
2.4.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4.4 인정취소의 계속기간 및 공개 등	
2.5 법정 의무교육	120
2.5.1 의무교육의 근거와 교육훈련기관	
2.5.2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	
2.5.3 등급별 교육 운영사항 안내	

안내사항

본 매뉴얼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대행자 및 기술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개요부터, 연혁, 작성, 심의, 후속 조치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기준과 실무상 노하우, 법령 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수록하였으나, 본 매뉴얼에 포함된 법령과 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매뉴얼에 제시된 평가서 작성 절차나 적용 기준 등은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적의 기준이 아닐 수 있으며,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관련 법령, 지침 등 제도적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여건 및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례]

법령 등의 명칭	약 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지침



제 I 장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1.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요
2. 교통영향평가 제도 연혁
3.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4.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5. 교통영향평가 절차도



1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요

1.1 개념 및 법적 근거

1.1.1 교통영향평가의 개념

-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함
- 우리나라 정부는 도시교통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86.12.31.), 같은 법 시행령(1987.7.24.) 및 시행규칙(1987.9.30.)을 제정·공포하였음

1.1.2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근거

-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1.2 대상사업

- 법 제15조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개발사업과 건축물)을 지정

구분	내 용	
개발사업	•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 개발 • 항만의 건설 • 도로의 건설	• (도시)철도의 건설 • 공항의 건설 • 관광단지의 개발 • 특정지역의 개발 • 체육시설의 설치
	•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1.3 평가 내용

- 교통영향이 미치는 시간적·공간적 범위, 교통개선대책 및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등
 - **(공통사항)** 교통시설·소통 현황, 토지이용현황, 주변 개발계획, 평가지표, 교통수요 예측, 교통유발원단위, 교통수단분담률, 주차수요, 서비스수준, 교통개선대책, 공사중 처리대책 등
 - **(중점분석항목)** 건축물-진출입 동선, 개발사업, 개발사업-교통망, 철도-정거장, 도로-교차 및 분기점

1.4 절차

- ① 사업자가 평가실시 → ② 평가서 제출 → ③ 평가서 심의 → ④ 교통개선대책 및 이행 의무사항 이행 → ⑤ 사업승인 → ⑥ 사후 관리
- ※ ①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통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 ② 평가서를 승인가청에 제출
 - ③ 승인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 심의·의결
 - ④ 사업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부여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
 - ⑤ 승인가청은 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사업승인
 - ⑥ 건축물의 경우 이행의무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1.5 사후관리

- 승인가청은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맞게 시설물 유지·관리·운영하도록 관리·감독

2

교통영향평가 제도 연혁

-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1986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으로 1987년부터 도입되었음.
이후 단계적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어 평가대상 규모, 평가 지역, 평가 명칭, 기술자 자격 제도 도입 등의 변경을 거듭하며 발전해 옴

법 제 · 개정일	내 용
1986.12.31. 제정 1987.04.01. 시행	• 교통영향평가 제도 도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
1990.01.13. 개정 1990.07.01. 시행	• 중앙교통영향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 등
1992.12.08. 개정 1993.06.09. 시행	• 평가기관의 관리를 위한 등록제 시행 • 평가대상 지역 확대(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1995.12.29. 개정 1996.06.30. 시행	• 평가대상 규모 조정 • 평가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교통영향평가지침 도입
1999.12.31. 개정 2001.01.01. 시행	•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통합되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삭제됨 •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제도 도입,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을 폐지하여 평가 대상 규모 일원화
2008.03.28. 개정 2009.01.01. 시행	•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환원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 • ‘교통영향평가’의 명칭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변경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축소(전국 →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 • 심의 기관을 교통영향심의회(중앙, 시·도) →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위원회
2015.07.24. 개정 2016.01.25. 시행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교통영향평가’로 명칭 환원 • 교통영향평가 이의신청 제도 및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이라도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7.08.09. 개정 2018.02.10. 시행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일부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이관
2021.03.23. 개정 2022.03.24. 시행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기술자 등급 구분)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도 도입 • 교통영향평가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제도 도입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근거 마련
2025.12.02. 개정 2026.06.03. 시행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23년 2월)에 따라, 10만 명이 넘지 아니하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

3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임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개념 및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3.1 도시교통정비지역

- 개념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법 제3조)
- 지정 기준
 - ①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 ②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지정 단위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3.2 교통권역

- 개념 :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 연계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으로, 사실상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인접하여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법 제4조)
- 지정 기준
 - 법령 상에는 지정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정 시마다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
 - * ('16년 지정 당시 기준) 시·군·구(단위)로서 국가교통DB의 기종점 통행량을 기준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과의 총 통행량(총목적 또는 통근통학) 중 양방향 통행량이 5% 이상인 지역
- 지정 단위 : 시·군·구(일반구 포함)
 - 위 지정기준에 따라 현재의 도시교통정비지역(84개소) 및 교통권역(218개소)이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9호, 2016.7.28.)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현황 |

도시교통정비지역	교 통 권 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양주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군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장성군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도시교통정비지역	교 통 권 역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양주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구리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광주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도시교통정비지역	교 통 권 역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괴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남도 공주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교통정비지역	교 통 권 역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무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교통정비지역	교 통 권 역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고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4.1 대상사업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크게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건축 두 가지로 나뉘며 법 제15조제1항,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 영 별표1에서 정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상사업 규모의 50% 내에서 정할 수 있음(법 제15조제4항)
- *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천안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까지 검토 필요

4.1.1 개발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 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km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km 이상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4.1.2 건축물(단일용도)

주 용 도	세 부 용 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및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그 밖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피소 및 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문화 및 집회 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에 따른 집회장 중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에 따른 동·식물원	부지면적 20,000㎡ 이상	부지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6)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7)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8)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학교 중 대학 및 대학교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 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시설 중 교습 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주 용 도	세 부 용 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0)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 이상
11)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12)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락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위락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14)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15)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창고시설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나목에 따른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이상	부지면적 82,50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가목,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마목에 따른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 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방송통신 시설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부지면적 12,000㎡ 이상	부지면적 18,000㎡ 이상
19) 관광휴게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함

4.1.3 건축물(복합용도)

○ 복합용도 건축물의 평가대상 : $Swa \geq 10,000m^2$

$$- Swa = \sum_{i=1}^n \frac{Pia}{Mia} \times 10,000, \text{ 여기서 } Pia : \text{용도별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m^2)$$

Mia : 각 건축물의 최소 개선대책수립대상 규모(m^2)

- *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주용도 및 부용도 등 용도별 면적 비율을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법」상 용도를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계산한 건축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m^2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
- * 다만, 공동주택과 같이 상가 등 부용도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주용도(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경우에는 단일용도로 판단함
- * 대상사업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예:노유자시설, 연립주택 등)의 경우 면적에서 제외하여 규모를 산정함

질의·회신 사례

버스공영차고지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2024.2.15. 회신)

- **(질의)**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여부
- **(회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16)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매매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버스 공영차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아목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의·회신 사례

건축물이 없는 장사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2025.3.7. 회신)

- **(질의)** 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없는 공설묘지(약 15만 m^2) 설치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 **(회신)** 묘지 관련 시설의 경우, 가족봉안묘, 잔디장 등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묘지로서의 수목, 잔디 등을 계획한 부지면적만으로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진출입로의 교통소통, 주차수급, 교통안전 등 구체적인 교통처리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공설묘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부지면적 12,000 m^2 이상(도시교통정비 지역의 경우)이라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됩니다.

질의·회신 사례

파크골프장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2025.5.27. 회신)

- **(질의)** 파크골프장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체육시설의 골프장인지 운동시설인지?
-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파크골프장은 운동종목으로서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골프장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파크골프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로서 부지면적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해당 파크골프장내 부대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에 따라 개별건축물(운동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도 판단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사례

공동주택이 복합용도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2026.1.12. 회신)

- **(질의)**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이 복합용도의 건축물인지 여부
- **(회신)** 주택단지에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은 하나의 ‘주택단지’로서 그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히 입주민용 관리사무소나 복리시설이 있다고 해서 복합용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서 별도 인허가 없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된다면 단일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이 단지 외부 일반인의 이용이 주된 목적으로 규모가 일반적인 부대복리시설보다 큰 경우로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 출입이 가능한 등 부대복리시설로 보기 어렵거나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복합용도 건축물로 보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 면제 사업 등

4.2.1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법 제15조제2항)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 주한미군시설사업은 「주한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임

4.2.2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는 경우 등(영 별표 비고 제5호)

- 공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면제
 -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개발사업 내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면제
 - 개발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필요사항 등 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창고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면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부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창고), 다목(물류터미널), 라목(집배송 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학생기숙사 면적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 및 대학교를 건축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 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건축연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4.3 준공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영 [별표1])

4.3.1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준공 후 확장 시

- ①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
 -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또는 확장규모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② 항만건설사업
 -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③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④ 도로건설사업

-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음

⑤ 건축물

-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4.3.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건축물의 준공 후 용도변경 시

-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

4.3.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사업규모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

i) 대상규모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허가 등을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ii) 대상규모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

-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허가 등을 받으면서 종전 승인 등을 받았던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되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30% 미만으로 증가되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다만, 여러 번 증가되는 경우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0%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iii) 대상규모 기준이 강화되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사업

-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허가 등을 받으면서 종전 승인 등을 받았던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허가 등을 받으면서 종전 승인 등을 받았던 규모보다 30% 미만 증가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②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

i) 사업규모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

-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을 받으면서 종전 승인 등을 받았던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면서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ii) 사업규모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

-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을 받으면서 종전 승인 등을 받았던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을 받으면서 종전 승인 등을 받았던 규모보다 30% 미만 증가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상황별 교통영향평가 실시 요건 |

과거 상황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			대상사업 미해당 사업	
현재 상황	i) 법령 개정으로 대상규모가 강화되지 않음	법령 개정으로 대상규모가 강화됨		법령 개정으로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됨	
		ii) 대상규모 미만	iii) 대상규모 이상	i) 대상규모 미만	ii) 대상규모 이상
교통영향평가 실시 요건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에 관계 없이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면서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된 사업규모가 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면서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된 사업규모가 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5

교통영향평가 절차도

| 교통영향평가 절차도 |

절 차	이행 기관 등	근거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자 → 승인관청(부서)	법 제16조제1항
평가서 검토 및 지자체(시·군·구) 의견조치	승인관청(중앙부처·시·도) → 시·군·구	법 제16조제3항 법 제17조제3항
지자체 의견 보완·제출	사업자 → 승인관청(부서)	
심의요청	승인관청(부서) → 심의기관(부서)	법 제17조제1항
사전검토	심의기관(부서) →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	지침 제25조제2항
사전검토보완서 작성·제출	사업자 → 승인관청(부서) → 심의기관(부서) * 사전검토의견에 따른 보완서 제출	지침 제25조제3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상급심의 가능	법 제17조·제18조 지침 제27조
심의의견 통보·보완요청	심의기관(부서) → 승인관청(부서) → 사업자	지침 제27조제4항
심의의결보완서 작성·제출	사업자 → 승인관청(부서) → 심의기관(부서)	지침 제27조제5항
심의의결서 통보	심의기관(부서) → 승인관청(부서) → 사업자	법 제16조제4항 지침 제27조제5항
심의결과(이행의무사항) 이행 * 사업 승인 이후 사업 시행 시	사업자	법 제22조제1항
심의결과 이행여부 확인 * 사업 준공 허가 이전	승인관청(부서)	법 제23조제1항
준공 전 변경	사업자, 승인관청(부서), 심의기관(부서) * 교통영향평가 제출 단계부터 동일하게 진행	법 제21조
준공 후 이행 관리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 개발사업은 제외	법 제24조의2

* 승인관청은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 심의기관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임(승인과 심의를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경우 승인부서 또는 심의부서로 봄)



제Ⅱ장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2.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의 산정
3.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1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1.1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의무

-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함(법 제25조제1항)
-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법 제26조제1항)

1.2 대행계약의 분리

-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법 제25조 제2항)
- * 일괄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낙찰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가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당 낙찰자는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계약주체가 될 수 있음. 다만, 설계 등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라도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경우는 별도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님. 다만, 도로건설사업의 경우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설계안이 교통영향평가로 유리하게 평가되도록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지침 제32조제3항)
-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영 제13조의3제2항)

1.3 사업자의 준수사항

-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법 제27조제1항)
-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 ⑤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법 제27조제2항)
 - ①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시행규칙 [별표1의2])

1.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 가. 교통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교통현황조사를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적은 경우
- 나. 교통현황조사 결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통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 다. 교통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는 문헌 등에 제시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확인하고도 적정하게 확인한 것으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2.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 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이하 이 호에서 “교통영향평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의 내용 항목을 누락한 경우
- 나.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보고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다. 고시 또는 공고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부지와 관련 있는 교통계획, 개발계획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②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의 산정

2.1 대행비용의 산정

2.1.1 산정기준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별표]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

(단위 : 인·일)

구 분	작 업 공 정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1. 서론	가. 사업의 개요	0.4	0.3	0.6	0.5	0.4	0.3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	0.4	0.6	0.6	0.5	0.3	0.3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	0.3	0.4	0.5	0.7	0.5	0.4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0.3	0.4	0.7	0.8	0.6	0.5
	계	1.4	1.7	2.4	2.5	1.8	1.5
2. 교통환경 조사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0.8	1.0	1.7	3.4	4.6	8.3
	나.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0.5	0.6	1.2	2.0	3.1	4.4
	다. 교통관련 공공계획	0.5	0.6	1.5	2.3	3.6	4.7
	계	1.8	2.2	4.4	7.7	11.3	17.4
3.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교통수요	가.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1.1	1.1	1.8	2.8	2.3	1.7
	나.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1.3	1.3	2.1	2.9	2.3	1.8
	다. 주차수요 예측	1.0	1.0	1.4	2.2	2.1	1.5
	계	3.4	3.4	5.3	7.9	6.7	5.0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주변가로 및 교차로(현황 및 문제점)	0.8	1.1	1.7	1.6	1.6	1.1
	(2) 진·출입동선(현황 및 문제점)	1.0	1.1	1.3	1.6	1.5	1.2
	(3) 대중교통 및 보행(현황 및 문제점)	0.5	0.7	1.2	1.4	1.5	0.9
	(4) 주차(현황 및 문제점)	0.8	1.0	1.4	1.3	1.4	0.9
	(5) 교통안전 및 기타(현황 및 문제점)	0.6	0.8	1.2	1.6	1.5	1.0
	소 계	3.7	4.7	6.8	7.5	7.5	5.1

구 분	작 업 공 정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나. 개선방안						
	(1) 사업지구 개선방안	1.3	1.3	1.7	1.8	1.9	1.8
	(2) 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	1.3	1.3	1.6	1.7	1.8	1.7
	(3) 시뮬레이션 분석(필요시 적용)	2.0	2.0	2.5	3.0	3.5	3.0
	(4) 종합개선안	1.2	1.4	1.7	1.8	1.9	1.8
	소 계	5.8	6.0	7.5	8.3	9.1	8.3
	다. 개선효과						
	(1) 계량분석	2.1	2.1	2.5	2.8	3.2	2.8
	(2) 비계량분석	0.9	1.0	1.1	0.9	0.6	0.4
	소 계	3.0	3.1	3.6	3.7	3.8	3.2
	계	12.5	13.8	17.9	19.5	20.4	16.6
5. 개선안 시행계획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0.8	1.0	1.4	1.4	1.2	0.7
	나. 공사중 교통처리대책(필요시적용)	0.8	1.0	1.3	1.1	0.9	0.7
	계	1.6	2.0	2.7	2.5	2.1	1.4
6.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작성	0.9	1.1	2.0	2.6	2.8	2.1
	나. 심의 준비	1.3	1.2	1.2	1.4	1.5	1.3
	계	2.2	2.3	3.2	4.0	4.3	3.4
합 계		22.9	25.4	35.9	44.1	46.6	45.3

2.1.2 산정방법

- ① 대상사업의 범위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은 ⑤와 같이 할증률을 적용하여 총 소요인력을 산출
- ② 약식 교통영향평가는 지침 제2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③ 변경심의는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의 변경)에 따라 기준 소요인력을 가감(加減)하여 일부만 적용
- ④ 시뮬레이션 분석과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은 필요시 적용

⑤ 직접인건비 산정 방식

- 총 소요인력 = $S \times \alpha \times \beta$

- S : 기준사업 범위에 대한 소요인력(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참조)
- α : 대상사업 범위 증가에 따른 할증률

$$\alpha = \left(\frac{X}{Y}\right)^{\frac{2}{5}}$$

- X :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
- Y : 영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면적기준)가 아닌 영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적용
- β : 대상사업, 지역별 가중치
 - * 대상사업 : 건축물(1.0), 개발사업(1.3), 도로 및 철도사업(1.0~1.2, 인터체인지, 교차로, 정거장 수에 따라 가감한다)
 - * 지역별 : 도시교통정비지역(1.0), 교통권역(0.7)
 - * 약식 교통영향평가(0.7)

2.1.3 산정비용의 게재방법 등

- 산정비용에 대한 가격산출 근거와 용역계약서 사본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끝문에 게재하여야 함(지침 제24조제6항)
- 산정기준 대비 60% 이하의 대행비용으로 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저가입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승인관청이 보고서를 집중관리하여야 함(지침 제26조 제1항)
 - * 현황조사표, 현황조사 참여인력 명단 및 조사비용의 지출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2 교통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공정률

| 단계별 공정률(안) |

단 계	용역수행 내용	공정률(%)	
		개별	누계
1. 용역 계약	계약 전 기술검토 수행 등	20	20
2. 현황조사 및 분석	교통조사 및 교통환경분석 등	20	40
3. 본보고서 작성·제출	전반적인 교통계획 수립 등	30	70
4. 사전검토보완서 작성·제출	교통계획 수정·보완	15	85
5. 교통영향평가 심의	전략 수립 및 심의 대응	10	95
6. 개선필요사항 통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5	100

* 사전자료 준비 및 관련자료 검토, 현장실비 및 조사인력투입 산정 적용, 소요인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정 비율을 고려하였음

3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3.1 작성 항목

- 교통영향평가서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지침 별표 1)

- 서 론
 - 사업의 개요
 -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 교통영향평가 범위(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중점분석 항목)
 -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 중점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 종합개선안
- 교통환경조사 분석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 계획
 -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 사업 미시행 시 수요예측
 - 사업시행 시 수요예측
 - 주차수요예측
-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경우 대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건축물	일반 개발사업	도로사업	철도 건설사업
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사업지구의 외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진·출입지점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정거장 내부 (외부↔대합실, 대합실↔ 승강장, 승강장, 환승역은 환승통로, 환승시설 진· 출입동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나. 진·출입 동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나. 사업지구의 내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나. 진·출입지점과 연결 되는 주변가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건축물	일반 개발사업	도로사업	철도 건설사업
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다.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나. 정거장 외부(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자전거, 보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라. 주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라. 주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라. 주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다. 주차(환승주차장 동선, 화물하역 공간 및 주정차 공간)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마. 교통안전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마. 교통안전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마. 교통안전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라. 교통안전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바.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 개선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바. 지역분리 극복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마. 지역분리 극복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5.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6. 참고자료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3.2 작성 내용(지침 제5조 ~ 제22조 참조)

3.2.1 교통영향평가 시간적·공간적 범위(지침 제5조)

3.2.2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지침 제7조)

3.2.3 토지이용현황·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지침 제8조)

3.2.4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지침 제9조)

- 3.2.5 교통영향평가 지표(지침 제10조)
- 3.2.6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지침 제11조)
- 3.2.7 교통유발 원단위(지침 제12조)
- 3.2.8 교통수단 분담률(지침 제13조)
- 3.2.9 첨두일 및 첨두시(지침 제14조)
- 3.2.10 주차수요예측(지침 제15조)
- 3.2.11 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지침 제16조)
- 3.2.12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지침 제17조)
- 3.2.13 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지침 제19조)
- 3.2.14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0조)
- 3.2.15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지침 제21조)
- 3.2.16 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지침 제22조)

3.3 약식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3.3.1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침 제23조제1항)

- ①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
- ②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종교시설 중 교회, 성당을 제외한 건축물
 -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을 제외한 건축물
 - 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라. 묘지관련시설
- ③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영 제13조의4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 ④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비고 제5호 가목, 나목 및 영 제13조의8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나.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수차에 걸쳐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확장·증축된 규모가 합산하여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참고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해설

- “③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영 제13조의4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이라 함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및 영 제13조의4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을 말함
- 단,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 등 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영 [별표 1] 비고 제5호)

3.3.2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방법과 절차(지침 제23조제2항)

- ① 시간적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목표연도까지로 함
- 가. 건축물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 나.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3년
- ② 공간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범위 이내로 하되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가.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다만, 위 1) - ③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와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 범위에 한함)
- 나. 개발사업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4개 이내 교차로
- ③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환경의 조사분석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④ 교통유발 원단위는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출할 수 있음. 다만, 관련 자료가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실측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 이상을 조사하여야 함

3.3.3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교통개선대책(지침 제23조제3항)

- 교통개선대책은 진·출입 동선, 위 2) - ②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 가로, 교차로의 소통 및 교통안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다만, 위 1) - ③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필요 시 생략 가능

3.3.4 공동주택의 약식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3조제4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음
 - 가. 교통환경조사 분석
 - 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 다.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 다만, 사업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같지 않거나 교통여건 상 필요한 경우 위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함

3.3.5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대행비용 산정

-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대행비용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대행비용의 70%를 적용함

3.4 보고서의 규격 등(지침 제22조)

보고서의 작성 방법

- ① 보고서는 A4용지를 좌철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한다.
- ② 통계표와 도면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접어서 제1항의 크기와 편집방향으로 통일한다.
- ③ 도면은 축척, 방위각 등을 표시하되 축소 또는 확대한 경우 이에 맞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합개선안과 토지이용현황은 색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④ 종합개선안 도면에는 대지경계선, 지상과 지하를 구분한 건축경계선, 도로단면도, 개념도, 범례, 사업지구 전체 구간의 폭·길이 및 보도·공개공지 등의 간격을 표시하며 지형여건에 따라 등고차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개선안에 계획고를 표시하고 대지 중·횡단면도, 구조물계획의 평면도를 제시한다. 이 경우 도로는 기하구조 기준, 횡단구성 제원, 평면도, 표준종·횡단면도를 제시한다.
- ⑤ 보고서의 겉표지에는 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이하 “평가대행업체”라 한다)를, 보고서의 제출문에는 평가대행업체(등록번호·등록일·책임자를 포함한다)와 보고서 제출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보고서 끝문에는 평가 대행구역의 수행기간, 평가 대행구역 시 참여전문인력, 보고서 인쇄업체, 구상구역의 수행업체, 평가 대행업체·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근거와 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⑦ ⑥에 따른 평가대행구역 참여전문인력 명단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과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하지 못한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명단에는 성명, 소속, 직책, 근무 기간, 개인별 작업일정표, 자격명·자격번호 및 참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⑧ ⑦에 따른 참여정도의 구분은 책임자, 교통환경의 현황조사, 관련자료의 수집, 교통영향평가 시 지표의 설정, 교통수요예측, 문제점 도출·분석 및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으로 구분한다.
- ⑨ 모든 현황조사 자료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한다.
- ⑩ 보고서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평가 대행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과 평가 대행업체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Ⅲ장

교통영향평가의 검토와 심의

1.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과 검토
2.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3. 교통영향평가의 통합심의



1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과 검토

1.1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영 [별표1]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16조제1항)
-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필요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법 제16조제5항), 승인관청(부서)은 교통영향평가서 접수 시 평가서 항목 및 계약서 등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심의기관(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함
 - 이때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즉시 접수하여야 함. 평가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더라도 이는 접수 후에 공문으로 통보할 사안이므로, 접수 전에 보완을 요구하여 사업 및 심의절차가 지연되게 해서는 안 됨
 - 또한 해당 평가서의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접수 전 보완을 요구하지 말고, 접수 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제시되도록 하는 등으로 검토 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하여야 함

1.2 계약 사항의 검토

1.2.1 체결 주체

- 계약 적정성 확인
 - 계약서 상 발주자가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
 - 발주자가 대리인·시공사·위탁기관 명의 시에는 법령(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사항임
 - 다만,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사업자의 지위가 낙찰자에게 이전된 경우 사업자로 보며, 이 경우라 하더라도 설계 계약과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분리계약 여부 확인
 - 기본설계·실시설계와 같이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법 제25조제2항)

-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은 가능. 다만,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구상용역 수행 업체가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은 불가(지침 제32조제3항)
-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제출 또는 심의요청 시 분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승인관청은 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청(영 제13조의 3제2항)

1.2.2 대행비용 수준

- 산출가격의 적정성 검토
 - 대행비용이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가격의 60%를 초과하는지 확인
 -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표, 직접인건비 단가, 할증률(α), 사업 규모(X), 대상사업 규모 기준(Y), 가중치(β) 등 적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확인
- 저가 계약(60% 이하) 시 집중관리
 - 산정기준 대비 60% 이하로 저가 계약 시 보고서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지침 제26조제1항)
 - 현황조사표(조사일시·장소·방법·참여인력 명단 포함), 기술인력별 업무분장 및 조사 비용 지출 현황,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현황조사의 적정성, 원단위 산출 근거, 교통수요 예측 논리성 등을 확인
 - 집중관리 대상자료는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 계약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의 검토
 - 산정기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경우(200% 이상)에는 교통영향평가가서가 객관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사업규모 및 복잡도를 고려하여 검토

1.2.3 계약 내용

- 계약서 내 필수 포함 업무 확인
 - 현황조사(교통량·원단위) 및 분석
 - 교통수요 예측 및 서비스수준 분석
 - 교통개선대책 수립(사업지구 내·외부)
 - 사전검토 및 심의대응(보완보고서 작성 포함)
 - 최종 심의의견 보완서 및 개선필요사항 반영

- 공정별 용역비용 지급 여부 확인
 -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자금 부족에 따른 부정확한 현황조사 등으로 부실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공정별 적정 용역비용을 설정하고 충실히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제2장 2.2 교통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공정률 참조)
 - 계약 해지 시에도 공정률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
- 사업규모 변경 등에 따른 계약 사항 확인
 - 사업규모 변경 등으로 변경심의 사항 발생 시 추가적인 대행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부실보고서 작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 변경 시 단가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변경 내용의 항목에 대해 소요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용역 비용을 재산정)

1.3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참 고

교통영향평가 검토와 심의의 관계

-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법 제17조제1항)하고 있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교통영향평가의 “검토”는 “심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령을 제·개정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인용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검토” 자체를 의제하거나 생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복잡·다양화로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통합심의나 검토 절차의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3.1 승인관청의 검토

-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이 세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음(법 제16조제2항)
-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16조제3항)

*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1.3.2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

- 심의기관은 보고서를 접수(보완보고서를 접수한 경우를 포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심의위원은 보고서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지침 제25조제2항)
 - 다만 변경심의에 대한 사전검토는 변경심의 사항에 한하여 검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검토 내용에 대하여 수용 또는 미수용(부분수용) 여부를 판단하되 미수용(부분수용)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함(지침 제25조 제3항)
- 승인관청은 위원회 개최 전에 사업자가 제시한 보완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함(지침 제25조제4항)

1.3.3 검토 항목(체크리스트)

-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승인관청(부서)가 직접 검토하기 보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 기능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① 개발사업

구분	검 토 내 용	지침	유/무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사업 준공연도에 따른 분석기준연도의 적정성 • 대상사업 범위에 따른 반경 내 조사대상 교차로 개수 기준 이상 포함	제5조제1항 제2항	
교통량 조사	• 첨두일 오전 첨두시 및 오후 첨두시 각 1시간 이상 조사 •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조사일수 및 요일기준 적용	제7조제3항	
원단위 조사	• 교통유발원단위 : 기존 건축물 실측자료(1개 이상) 및 관련 자료(3개 이상) 또는 기존 건축물 실측자료(3개 이상) • 주차수요원단위 : 유사 건축물 현지조사 결과(1개 이상) 및 관련 자료(3개 이상)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구분	검 토 내 용	지침	유/무
첨두일 첨두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유발량과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	제14조	
효과분석	•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 수록 여부	제19조제1항 ~ 제4항	
외부 개선대책	•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대책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 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관련 지역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반영 여부 확인	제20조제1항 제5항	
공사중 처리대책	•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로 인접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 • 단,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	제21조제1항	
참고자료 정리	• 교통량 조사자료, 현황조사자료, 관련 자료 조사결과, [별지 제1호]의 교통영향평가 분석표 작성 수록	제22조제1항 제2항 제5항	
대행비용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 근거와 계약서 사본 첨부	제24조제6항	
	• 교통영향평가 수립 비용 산출금액의 60% 초과 계약 여부 확인	제26조제1항	

② 건축물

구분	검 토 내 용	지침	유/무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사업 준공연도에 따른 분석기준년도의 적정성 • 대상사업 범위에 따른 반경 내 조사대상 교차로 개수 기준 이상 포함	제5조 제1항 제2항	
교통량 조사	• 첨두일 오전 첨두시 및 오후 첨두시 각 1시간 이상 조사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조사일수 및 요일기준 적용	제7조 제3항	
원단위 조사	• 교통유발원단위 : 기존 건축물 실측자료(1개 이상) 및 관련 자료(3개 이상) 또는 기존 건축물 실측자료(3개 이상) • 주차수요원단위 : 유사 건축물 현지조사 결과(1개 이상) 및 관련 자료(3개 이상)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첨두일 첨두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유발량과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	제14조	

구분	검 토 내 용	지침	유/무
효과분석	•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 수록 여부	제19조 제1항 ~ 제4항	
외부 개선대책 (필요시)	• 외부 교통개선대책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 제시 • 관련 지역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반영 여부 확인	제20조 제1항 제5항	
공사중 처리대책	•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로 인접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 • 단,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	제21조 제1항	
참고자료 정리	• 교통량 조사자료, 현황조사자료, 관련자료 조사결과, [별지 1호]의 교통영향 평가 분석표 작성 수록	제22조 제1항 제2항 제5항	
대행비용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 근거와 계약서 사본 첨부	제24조 제6항	
	• 교통영향평가 수립 비용 산출금액의 60% 초과 계약 여부 확인	제26조 제1항	

2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2.1 심의기관

2.1.1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원칙)

- 승인관청은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원칙, 법 제17조제1항)

2.1.2 상급기관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 다만, 아래의 경우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국토부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기속행위, 법 제17조 제4항, 영 제13조의4제3항)
 - ①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 ②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 ③ 시·도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 ④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 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한 경우
 - ⑤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 ⑥ 건축위원회 참석위원의 1/4 이상이 교통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참 고

중앙행정기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은 ④, ⑤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가능

-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중앙부처·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급기관에 심의 요청이 가능(재량행위, 법 제18조제2항)

상급심의의 요건 등

☑ 승인등을 받는 사업자

사업 및 심의 관련 상황	승인관청	상급심의
①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칠 때	시·군·구	시·도 소속 심의위원회
② 교통영향평가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 나는 때		
③ 시·도조례로 교통영향평가의 지역적 범위를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르게 정한 때	시·도	국토교통부 소속 심의위원회
④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협의를 한 때	중앙부처 (④⑤해당)	국토교통부 소속 심의위원회
⑤ 심의요청일부터 1개월 내 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됐을 때		
⑥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시 건축위원회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 승인 등을 받지 않는 사업자(중앙부처·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사업 및 심의 관련 상황	사업자	상급심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필요성을 인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문맥상 해당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사전에 상급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	시·군·구 (소속기관 포함)	시·도 소속 심의위원회
	중앙부처 (소속기관 포함)	국토교통부 소속 심의위원회

2.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1.1 위원

○ 정수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13조의6제1항)
- 위원회의 정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상한선이 없는데 이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운용하도록 한 것임

○ 자격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 관청 등(승인관청 등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됨(영 제13조의6제2항)

○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총 6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영 제13조의6제3항)

○ 해임 및 해촉

- 승인관청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가능(영 제13조의6제4항)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영 제1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1.2 위원장과 부위원장

○ 선정 방법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영 제13조의6 제5항)

참 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호선하는 것이 아님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면서(영 제13조의6제6항),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 등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조 제7항),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 등은 회의 소집 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8항)고 하고 있으므로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교통전공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함

○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총괄(영 제13조의6제6항)

참 고

위원장의 역할

- 회의 개최 및 폐회 선포
- 정족수 확인, 위원의 제척, 회피의 승인
- 안건의 상정 및 표결
- 발언의 허가 및 중지
- 회의의 질서 유지 및 회의 중지
- 회의장 입장 허가 및 퇴장 명령
- 안건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설명에 대한 요구 등

2.1.3 위원회의 운영 방법

- 승인관청(심의기관 또는 부서)은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지침 제27조제1항)

참 고

연간 심의일정에 대한 공지 권고

- 심의기관은 연초에 해당 연도의 심의일정 계획(예 : 특정 주 · 요일)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사업자의 심의 예측성을 제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

- 아래의 경우 서면 또는 소위원회(3~4인)를 개최하여 심의 가능(지침 제27조제1항)
 - 심의 건수가 1건인 경우
 - 약식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3조) 심의
 - 보완(지침 제27조제7항) 내용에 대한 심의
 - 변경허용 인정범위(지침 별표 4)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심의
-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다)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2명의 위원에게 자문(검토)을 받아 심의를 갈음할 수 있음(지침 제27조제1항제5호)

2.3 위원회의 개최

2.3.1 회의 소집

-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 등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시 사전 추천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9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함(영 제13조의6제7항)
 - 사업의 대규모화, 교통수단 및 시설의 다양화, 복잡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참여 위원에 대하여 위촉 위원의 3/4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

회의 성원(成員)은 5명 이상임

- 회의 개최 시 위원회 구성인원의 하한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위원회를 3~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침 제27조제1항), 회의 성원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할 것임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사업자에게 통보함.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영 제13조의6제8항)

2.3.2 개의와 의결

-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영 제13조의6 제9항)

2.3.3 제척, 기피, 회피(영 제13조의7)

○ 제척(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 등 법률 등이 정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심의, 의결을 행할 수 없음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기피

-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불가

○ 회피

- 위원이 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참 고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의미

- 지침 제32조제4항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보고서의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심의 장소 출입을 금하는 의미는 아니며, 심의위원의 제척·기피 요건으로 보아야 함

2.4 심의 및 의결

2.4.1 심의의 진행

-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음(영 제13조의6제11항)
 - 현행 법령상 평가책임자의 설명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실무상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교통영향평가가 책임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의견 중 미수용과 부분수용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은 사전검토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안됨(지침 제25조제5항)

2.4.2 심의 기준

① 공통사항

- 교통 문제점은 예측된 교통수요와 상위계획 및 법령에 근거하여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도출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 현황조사 결과, 수요예측 결과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도출
- 지침 상의 중점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개선대책은 시행계획 내용, 시행시기, 비용주체, 시행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종합개선안도 개선안 내용과 보고서 시행계획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 사전검토 의견 중 미수용과 부분수용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위원은 사전검토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안됨(지침 제25조제5항)
 -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도 제시 가능

②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심의기준

심의항목	개 발 사 업	건 축 물
1. 가로 및 교차로 개선 대책	•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교통량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체계와 사업지구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교통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의 적정성 검토 • 사업지구 내부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도로위계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과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의 적정성 여부 • 교차로 신설시 인접 교차로간의 간격, 교차로 면적 최소화, 정형화, 부가차로 설치, 신호·비신호 운영, 보호·비보호 좌회전 운영 등 합리적인 교차로 운영계획 적정성 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교통량 처리를 위한 가로 및 교차로 교통처리 능력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의 적정성 검토 • 교차로 신설시 인접 교차로간의 간격, 교차로 면적 최소화, 정형화, 부가차로 설치, 신호·비신호 운영, 보호·비보호 좌회전 운영 등 합리적인 교차로 운영계획 적정성 검토
2. 진출입 동선 개선 대책	•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교통량 처리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과 사업지구 내부도로와 외부도로 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교통량과 통과 교통량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 각 블록별 차량의 진출입 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와 유발 교통량 분산 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 여부 •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교통상황에 대비한 진출입구의 위치 적정성과 주변가로의 통행패턴 분석 및 사업지구 유발교통량 간 상충방지를 위한 진출입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 주변 도로위계 및 교통현황을 고려한 진출입구 위치 적정성, 발생교통량 처리를 위한 적정 진출입 개소수 및 차로수 확보, 진출입구 운영방안(교차로 운영, 우회전 진출입 운영)의 적정성 검토 • 가·감속차로 및 대기차로 확보, 보행자·자전거 동선과의 상충 최소화 등 진출입부 안전 확보 방안 검토 • 개별 필지에 설치되는 가·감속차로(차도 및 보도포함)가 사업지 내부공간(사업지 대지경계선)을 활용하여 설치될 경우 관리목적으로 기부채납이 필요할 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검토
3. 대중 교통 개선 대책	• 상위계획과 연계한 버스전용차로, 지하철, 전철 경전철등의 역사위치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분담 및 연계수송처리의 적정성 여부 • 주변 가로 운영현황을 고려한 버스 및 택시 베이 설치 필요성과 관련 편의시설(셸터, BIT)의 설치의 실현 가능여부 검토	• 주변 가로 운영현황을 고려한 버스 및 택시 베이 설치 필요성과 관련 편의시설(셸터, BIT)의 설치의 실현 가능여부 검토
4. 보행 및 자전거 개선 대책	• 사업지구와 외부 주요시설까지 연결되는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와 시설기준에 적합한 유효폭원의 적정성 여부 • 적정 보도폭원, 역사·터미널 내 수직·수평 이동 동선, 입체횡단시설 내 승강기 등 연속적인 무장애 동선 계획 검토	

심의항목	개 발 사 업	건 축 물
	-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접근 동선, 저상 버스 및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승하차 시설, 열차와 승강장 간격 등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방안 검토 -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 확보와 보도 설치 폭원의 적정성 검토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변 자전거도로로 설치, 운영현황을 검토, 현황 자전거도로와 연계된 자전거도로로 설치 필요성 및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의 적정성 검토	-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 확보와 보도 설치 폭원의 적정성 검토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변 자전거도로로 설치, 운영현황을 검토, 현황 자전거도로와 연계된 자전거도로로 설치 필요성 및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의 적정성 검토
5. 주차 공급 및 운영	- 예측 주차수요, 법적 기준 등을 고려한 주차 공간 확보 계획의 적정성 및 유형별 주차대수 확보의 적정성 검토 - 주차장 진출입 동선 등 내부 교통 흐름을 고려한 주차면 배치 계획의 효율성 검토 - 주차정보시스템(PIS), 요금 정책, 전기차 충전시설 등 미래지향적 주차 운영·관리 계획의 타당성 검토	- 예측 주차수요, 법적 기준 등을 고려한 주차 공간 확보 계획의 적정성 및 유형별 주차대수 확보의 적정성 검토 - 주차장 진출입 동선 등 내부 교통 흐름을 고려한 주차면 배치 계획의 효율성 검토 - 주차정보시스템(PIS), 요금 정책, 전기차 충전시설 등 미래지향적 주차 운영·관리 계획의 타당성 검토 -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주차장 계획(통로폭원, 경사로(폭원, 경사도), 통과높이)의 적정성 검토
6. 교통 약자 편의 개선 대책	- 보도의 유효폭·경사로, 점자블록, 수직·수평 이동 동선, 입체횡단시설 내 승강기 등 연속적인 무장애 동선계획 검토 - 주차공간은 보행출입구와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계획 검토 - 교통약자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 시간, 음성·점자 안내 시스템, 야간 조명 등 안전 및 편의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보도의 유효폭·경사로, 점자블록, 수직·수평 이동 동선, 입체횡단시설 내 승강기 등 연속적인 무장애 동선계획 검토 - 주차공간은 보행출입구와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계획 검토 - 교통약자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 시간, 음성·점자 안내 시스템, 야간 조명 등 안전 및 편의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7. 교통 안전 및 교통 정온화	- 지역분리 극복과 사업지구 주변 이해관계인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장애요인 극복의 적정성 여부 -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및 해당 보호구역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 교통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시설(반사경, 경고등) 설치 지점 및 설치효과의 적정성 검토 -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및 해당 보호구역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심의항목	개 발 사 업	건 축 물
	통계자료를 활용, 분석을 통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기하구조 개선, 운전자 시거 확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통계자료를 활용, 분석을 통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기하구조 개선, 운전자 시거 확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8. 공사중 교통 처리 대책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우회도로 확보·안내, 작업자 및 통과 차량 안전 관리 등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의 현실성 및 명확성 검토	-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우회도로 확보·안내, 작업자 및 통과 차량 안전 관리 등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의 현실성 및 명확성 검토 - 학교 주변(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보행자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전 단계에서 별도로 공사중 교통처리대책방안 제출 여부 검토
9. 건축물 용도별 개선 대책	-	- 공동주택은 동별 적정 주차면 배치, 규모별(전용면적), 세대당 적정 주차대수 확보, 비상차량 동선체계 수립, 학원, 택배차량 동선을 고려한 드롭존 설치계획, 조업주차면 배치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복합시설은 각 용도별 차량 진출입구, 주차동선 분리 운영의 적정성 검토 - 공공청사는 장래 상근인구 계획 반영(증축, 신축, 이전)의 적정성 검토 -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량이 높은 판매시설은 주차수요 대비 계획주차 확보비율의 적정성 검토 - 교육연구시설(대학교)는 캠퍼스 동별 주차수요 및 공급계획, 학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계획, 주차장 및 교통안내 정보체계 수립의 적정성 검토 - 업무시설(주거형 오피스텔은) 규모별(전용면적), 호실당 주차대수가 확보의 적정성 검토
10. 준공 전/후 모니터링 검토	- 사업의 완료 시점이 기반시설 준공으로 명확한 개발사업(도로, 철도, 항만, 공항, 체육시설 등)은 교통개선대책의 개선효과 분석을 위한 준공전/후 모니터링 실시여부 검토 - 사업의 완료 시점이 건축물의 완공까지 이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라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준공전/후 모니터링 실시여부 검토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0조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인 사업중 교통개선대책의 개선효과 분석을 위한 준공전/후 모니터링 실시여부 검토 -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라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준공전/후 모니터링 실시여부 검토 - 사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모니터링의 시행 시기 및 대상범위의 적정성 검토

2.4.3 의결 방법

-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의결이 있음(지침 제27조제3항)
 - 원안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
 - 수정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 보완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 고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유보 또는 보류 등으로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권한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원안 및 수정의결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의결을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서가 보완되도록 하여야 함

2.5 심의결과와 통보 등 후속조치

2.5.1 심의결과와 통보

- 심의기관(부서)은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관청(부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함(지침 제27조제4항)

2.5.2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보고서의 제출

- 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지침 제27조제5항)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에 포함할 사항(지침 제27조제5항)

- 사업명 및 사업자
- 사업기간 및 평가대행자
- 사업위치, 용도
- 사업규모(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용적률)
- 사업형태
 - 건축물은 동·층(지상지하), 진출입구 수
 - 개발사업은 개발형태·진출입구 수
- 목표연도별 침두시 교통량 유발 대수
- 주차시설(면수), 진출입동선, 주변가로와 교차로, 보행시설,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시설 및 기타 심의사항
- 첨부할 사항
 - 종합개선안도(배치계획, 동선계획 포함)
 - 차량동선체계도, 보행동선체계도, 주차동선 체계도(각 주동선·부동선 체계 구분)
 - 용도별 면적표 또는 토지이용계획표
 - 건축물의 배치계획, 교통개선대책 변경 대비표 (변경심의 경우)
 -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교통영향평가지침」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 사항
 - 기타 심의 시 추가 또는 보완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계획 및 관계 도면

- 보완의결에 따라 그 내용을 송부받은 사업자는 이를 보완한 후 승인관청에게 다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승인관청은 보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완내용을 심의하여야 함(지침 제27조제7항)
 - 위원장은 보완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지침 제27조제8항)

2.5.3 개선필요사항의 통보

- 승인관청은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의 내용을 확인 후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지침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함(지침 제27조제5항)
- 사업자는 수정의결한 내용을 충족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승인관청은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함(지침 제27조제6항)

참 고

개선필요사항의 의미

- “개선필요사항”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보완사항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 내 개선할 사항,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사항, 그밖에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법 제16조제4항) 사실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의미함

* 시행규칙 서식1부터 서식4(지침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과 동일)

2.5.4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자는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법 제17조의2제1항)
 -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3조의5제1항)
 -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영 제13조의5제2항)

참 고

이의신청의 대상

-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므로,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질의·회신 사례

개선필요사항 등의 범위(2026.3.10. 회신)

- **(질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에 승인관청이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교통 관련 사항 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개선필요사항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①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사업계획 등의 조정·보완, ③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즉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교부·통보된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 시행주체, 시행시기, 비용부담 주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선필요사항 통보 이후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의 교통관련 보완 요구 사항이나 승인조건들은 이미 통보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의 개선필요사항 등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6 수당 등의 지급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 지급 가능(영 제13조의6제10항)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배제(영 제13조의6제10항)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 등을 참조

3

교통영향평가의 통합심의

3.1 통합심의의 의의 및 목적

- 통합심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한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을 말함
 - 개별심의 진행에 따른 과다한 사업기간 단축
 - 개별심의회에 따른 업무 중복과 인허가 지연 해소
 - 분야별 중복되는 협의 사항을 해결하여 효율성 증대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건축심의 등 타 심의로 인한 변경 사항을 최소화

| 개별심의와 통합심의의 비교(정비사업 기준) |



3.2 통합심의를 규정한 법령

법령명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명	비고
건축법 (제72조제2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공공주택특별법 (제33조제1항)	공공주택지구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1조제1항)	법 제98조제1항의 사업	중앙통합심의위원회 지방통합심의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특별정비구역 내에서의 심의	통합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	혁신지구의 지정 및 시행계획의 인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인가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도시개발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도시계획 · 건축 · 환경 · 교통 ·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위원회	

법령명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명	비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주택법 (제18조제1항)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	공동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토지이용 인·허가 결정	통합심의위원회	

3.3 통합심의에 따른 후속 조치

3.3.1 심의결과의 작성

- 통합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통합심의 결과의 작성 양식은 각 통합심의위원회 관련 양식을 따르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개별심의와 동일한 서식 및 절차를 따라야 함
 -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의결내용은 지침의 별지2호~별지6호의 서식을 사용하고, 의결 결과도 지침 제27조제3항에 따라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으로 작성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령 등에 맞게 조치하여야 함

3.3.2 심의결과의 통보

- 통합심의를 경우에도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 등의 조정·보완
 -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심의기관(부서)은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관청(부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함(지침 제27조제4항)

3.3.3 통합심의 이후 교통영향평가의 변경

- 통합심의를 따른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통보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교통영향평가 개별심의와 동일하게 영 제13조의8, 지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변경심의 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변경으로서 교통영향평가 개별심의를 가능한 경우는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임

질의·회신 사례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효력 상실 관련(2025.6.5. 회신)

- ▣ **(질의)**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통합심의를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여부
- ▣ **(회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통합심의의 효력 상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된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Ⅳ장

교통영향평가의 이행과 변경

1.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이행
2. 교통영향평가의 변경



1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이행

1.1 이행의무사항의 관리(사업자)

1.1.1 이행의무사항의 개념과 이행 의무

- 이행의무사항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 후 준공 전 또는 준공 후까지 이행하여야 할 교통개선대책을 말함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법 제22조제1항)
- 사업자는 공사 중 이행의무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관청은 사업 승인 등 전에 이행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1.2 관리대장의 비치와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시행규칙 서식 5)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법 제22조제2항)
- 사업자는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함)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조의6)
- 사업자는 관리책임자 지정 또는 변경 후에는 20일 이내에 승인관청에게 통보(시행규칙 서식 6)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조의7)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으로 함(시행규칙 제2조의8)

질의·회신 사례

교통영향평가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2025.1.22. 회신)

- **(질의)** 관리책임자 지정시 교통기술사의 자격으로 현장배치기준(700억원이상 사업장 : 기술사)에 부합하는지 여부
- **(회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는 교통기술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3 이행현황의 점검 및 보고

-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시행규칙 서식 5)에 이행계획 및 이행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이행내용 작성하여야 함
- 관리책임자가 점검·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2조의8제2항)
 -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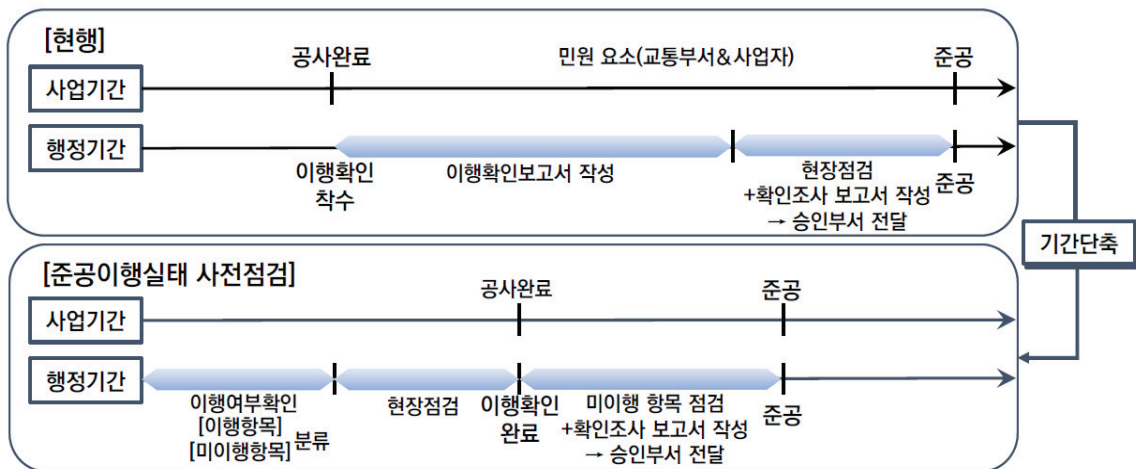
추가적인 점검 사항

- 이행의무사항 이행 계획, 이행 현황, 미이행 사항
- 교통개선대책 이행 관련 사전 행정절차 진행 상황(ex.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공사 실시설계 차이 여부(ex. 사업지 경계 변경, 도로 폭원 변경 등)
- 교통개선대책 이행 관련 유관기관 협의사항, 민원 발생 사항
- 이행의무사항 이행 불가 시 대책(ex. 교통영향평가 변경 이행, 공사계획 변경 등)
- 기타 이행의무사항 이행 관련 주요 사안

1.1.4 이행의무사항의 사전 점검

- 착공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의무사항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준공 시점에 임박하여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준공 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사전적·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는 공사 완료 이전에 설계·시공업체,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합동으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는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잘못 이행된 이행의무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견·조치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 변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사업비 증액 등을 예방할 수 있음

| 이행의무사항의 사전 점검을 통한 준공 기간의 단축 |



1.1.5 준공 후 이행할 이행의무사항에 대한 관리

-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조의8제3항)

1.1.6 이행의무의 승계

-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의무, 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됨.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상황, 승계의 일시·내용 및 사유를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22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의9)

1.1.7 이행의무사항 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

-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0조제2항제1호)

1.2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사업자)

1.2.1 작성 방법

- 사업자는 승인관청의 요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법 제23조제2항)
-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작성 시 이를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함(법 제23조제6항)
 - 이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는 교통영향평가 최초심의,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 시 대행한 대행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대행자 선정에 유의하여야 함

질의·회신 사례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작성 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2025.4.7. 회신)

- **(질의)** 최초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후 5차례의 변경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다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 의해 진행함. 이후 이행의무사항의 이행확인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그 간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했던 모든 대행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 **(회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은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을 대행한 자를 의미합니다.
 - 이는 최초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변경신고, 변경심의를 대행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자와 개선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이행의무사항 자료작성 대행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 작성 내용

-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작성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음(지침 제31조제2항)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작성(지침 [별표9])

1. 사업개요
 - 가. 사업지구 위치
 - 나. 사업개요(단계별 교통개선대책 변경내용 포함)
2.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 사항
 - 가. 심의결과
 - 나. 최종 종합개선안(외부 및 내부 교통개선대책 내용)
 - 다. 주차장 개선안
3.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 사항
 - 가. 이행여부 확인사항(총괄표)
 - 나. 이행사항 확인사항(교통개선대책 항목별)
4. 참고자료

1.3 이행의무사항의 확인(승인관청)

1.3.1 확인 시기

- 승인관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준공 승인 전에 하여야 하는지 법령에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이행 시 조치명령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준공 승인 전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질의·회신 사례

이행의무사항의 확인 시점(2025.2.19. 회신)

■ **(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사업진행 시 시설사업부지 내 건물의 별 사용승인에 대해서 사용승인 시마다 이행의무사항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일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회신)** 승인관청의 이행의무사항 확인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준공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개선안 시행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부지 내 건축물별로 사용승인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성격 및 규모,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관청이 이행여부 확인시기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확인 시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최종 준공단계에서 일괄 확인할지 또는 개별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행사항이 있어 개별건축물 사용 승인시 확인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승인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관청은 사업자의 준공 승인 신청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라도 해당 사업 및 이행의무사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미이행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 있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법령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따르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후 치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행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승인관청은 준공 승인을 해서는 안되며, 준공 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변경)사항은 재시공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실제로 교통영향평가 이후 실시설계, 공사진행 단계에서 이행의무사항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의 단계별 준공, 건축물 동별 사용승인 등과 같이 전체 사업에서 일부 준공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의 판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의무사항 확인이 가능할 것임

1.3.2 확인 방법

-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해당 사업의 승인 등을 신청할 때에 교통영향평가서와 함께 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승인관청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법 제23조제2항)

-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 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함(법 제23조제3항)
-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법 제23조제4항)
- 조사·확인 후에는 즉시 조사·확인결과보고서(시행규칙 서식7)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조의10)

1.4 이행의무사항 미이행 시 조치(승인관청)

1.4.1 조치명령

-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법 제24조제1항)

1.4.2 공사중지명령

- 승인관청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함(법 제24조제2항)

참 고

공사중지의 범위

- “공사중지”는 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임으로 특정범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사업 전반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타당함

1.4.3 과태료 부과

-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법 제60조 제1항제2호)

1.4.4 벌칙

-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2 교통영향평가의 변경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교통영향평가의 결과 즉 개선필요사항대로 사업 시행이 부적합해 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사업의 착공 시점, 사업계획 또는 개선대책의 변경 정도, 변경 시점(준공 전·후)에 따라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1 사업준공 이전

2.1.1 변경심의 대상

-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 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21조)

참 고

변경심의 시점에 대한 판단

- 해당 조문은 변경 시점이 ‘사업준공 이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 이전 시점의 변경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① 개선필요사항을 통보받은 후 5년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영 제13조의8제1항)

참 고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한 날 등의 개념

- “개선필요사항 등이 통보된 날”이라 함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변경)를 거쳐 검토된 결과서 즉, 개선필요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통보(교부)한 날을 의미함
-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라 함은 착공계 제출일이 아닌 실제 착공일을 의미함

- ② 아래의 사유로 개선필요사항에 따른 사업시행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영 제13조의8제2항)
1.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제1호)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제2호)
 3. 토지이용 또는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제3호)

참 고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지침 제28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함

1. 건축물
 -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 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마.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참 고

진출입구 인정 범위

- 지침 제28조제2항제1호 건축물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서 진출입구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차량이 통행하는 곳을 지칭하며,
- 평소 보도 턱낮춤 및 불라드를 설치하고, 비상차량(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등)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계획한 비상출입구는 진·출입구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상출입구의 신설·폐지는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의2.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제3의2호)

4. 교통개선대책 변경허용 인정범위(지침 별표4)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제4호)

- 건축위원회 통합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변경사항이 교통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 위원회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1.2 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 변경심의 보고서는 지침 별표 5에서 정한 내용항목에 따라 작성(지침 제30조제1항)
 - 변경심의 사유에 따라 내용항목을 가감할 수 있으며 교통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 가능함. 또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참 고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5] 변경심의 보고서 작성

1. 최초 심의결과 요약
 - 가. 사업의 개요
 -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 다.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 라.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3. 변경심의를 따른 교통개선대책(안)(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4.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2.1.3 변경신고 대상

- 영 제13조의8에서는 변경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지 않은 경우,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 제29조에 변경신고 대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지침 제29조제2항), 승인관청은 변경신고 대상 항목을 참조하여 변경신고의 적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리하여야 함

①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지침 [별표 4])

1. 건축물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가. 가 로 (街 路)	도로 신설	-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교차지점 신설 및 차로수 축소 불가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도로 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교차로의 운영	- 차로폭 10% 이하 축소 - 각각의 회전반경 10%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 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다만, 사업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진 출 입 동 선	진·출입구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또는 25 % 이하 확폭 - 각각부 : 10% 이하 축소	진출입구 신설 또는 폐지 불가
	진·출입로 (진·출입구~주차장 간 연결로)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 각각부 : 10% 이하 축소	
	진·출입 동선체계		-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 ↔ 양방, 방향 전환 등)
	완화차로	- 길이 : 10% 이하 축소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다. 주 차	주차면수(면적) 추가	- 심의·의결대수의 10% 이하 증가	- 다만, 대상사업 규모 증가 비율 적용 가능
	주차면수(면적) 제거	- 심의·의결대수의 5% 이하	- 다만, 대상사업 규모 감소 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5%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유지
	램프 설치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진출입구 추가 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 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라. 대 중 교 통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 가능 - 주차면의 위치 이동 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 ↔ 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 이내는 변경 가능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 불가
	기계식 및 자주식 비율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자주식 비율 10% 이하 축소	
	버스정류장 설치 택시정류장 설치	- 길이(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 폭(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20m 이하 변경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설치 불가하나 각각 최소길이 이상 확보 시는 가능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 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마. 보 행 및 자 전 거 도 로	보도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보도 확폭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보행동선체계		- 단절 불가
	횡단보도 신설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사업지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의 관할 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자전거도로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사업지 또는 사업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바. 안 전	자전거 보관소 설치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가능
	과속방지턱 시설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 불가(단, 경찰관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 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안내판 시설		
	각종경고등 설치		
	노면마킹, 표지병		
	기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2. 개발사업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가. 가 로 (街 路)	도로 신설	-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교차지점 신설 및 차로수 축소 불가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 (좌회전 2.75m 이상)
	도로 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교차로의 운영	- 차로폭 15% 이하 축소 - 각각의 회전반경 10%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 (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 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진 출 입 동 선	진·출입구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20% 이하 축소 또는 25% 이하 확폭 - 각각부 : 10% 이하 축소	진출입구 신설 또는 폐지불가
	진·출입로 (진·출입구~주차장 간 연결로)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15% 이하 축소 - 각각부 : 10% 이하 축소	
	진·출입 동선체계		-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 ↔ 양방, 방향 전환 등)
	완화차로	- 길이 : 15% 이하 축소 - 폭원 : 15%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다만, 진·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경우는 가능
다. 주 차	주차면수(면적) 추가	- 심의 · 의결대수의 15% 이하 증가	- 다만, 대상사업 규모증가비용 적용 가능
	주차면수(면적) 제거	- 심의 · 의결대수의 5% 이하	- 다만, 대상사업 규모감소비용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10%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유지 - 진·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램프 설치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라. 대 중 교 통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 가능 - 주차면의 위치 이동 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 이내는 변경 가능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기계식 및 자주식 비율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자주식 비율 10% 이하 축소	
	버스정류장 설치	- 길이(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폭(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30m 이하 변경	- 다만, 가감속 완화공간 내에 중복 설치 불가하나 각각 최소 길이 이상 확보 시는 가능
마. 보 행 및 자 전 거 도 로	택시정류장 설치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보도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보도 확폭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다만, 기존 보행동선체계의 단절이 없고 동일폭원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보행동선체계		- 단절 불가
	횡단보도 신설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자전거도로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바. 안 전	자전거 보관소 설치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가능
	과속방지턱 시설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 불가(단, 경찰관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안내판 시설		
	각종경고등 설치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노면마킹, 표지병		
	기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참고

‘가. 가로’ 항목에 대한 예시

※ ‘도로 신설’은 교통영향평가 시 신설되는 도로를 말하며, ‘도로 확폭’은 교통영향평가 시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의 도로를 의미함

가. ‘도로 신설’ 항목의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① 확폭의 의미

- 폭원 10m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후 금회 11m로 확폭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대비 전체 폭원이 1m 증가하는데, 증가 규모와 관계없이 확폭하는 사항은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임

② 차로당 30cm 이하 축소의 의미

- 폭원 10m(5m×2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후 금회 9m(4.5m×2차로)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대비 1개 차로를 50cm 축소하는 것인데, 이는 변경허용 인정 범위인 30cm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임(당초 5m에서 4.7m 까지 축소하는 경우가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임)
- 이 경우 기타 항목의 “차로수 축소 불가 및 최소 차로폭 3.0m 이상(좌회전차로의 경우 2.75m 이상)”의 요건은 유지되어야 함. 즉, 4.7m로 축소하더라도 당초보다 차로수가 감소하거나 최소 차로폭 3.0m(좌회전차로의 경우 2.75m)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한 것임

나. ‘도로 확폭’ 항목의 “확폭 및 폭원의 10% 이하 축소”

① 확폭의 의미

- 기존 도로 10m를 20m로 확폭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후 금회 21m로 확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확폭 사항은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임

② 폭원의 10% 이하 축소의 의미

- 기존 10m 도로를 20m로 확폭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후 금회 당초 대비 2m가 축소된 총 18m로 확폭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도로 확폭의 20%가 축소되는 것이므로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한 사항임
- 기존 도로 대비 확폭이 10m에서 9m로 변경된 경우라면 도로 확폭의 10%가 축소되는 것이므로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임
- 이 경우 기타 항목의 “차로수 축소 불가 및 최소 차로폭 3.0m 이상(좌회전차로의 경우 2.75m 이상)”의 요건은 유지되어야 함. 즉, 폭원 1m를 축소하면서 최소 차로폭 3.0m(좌회전차로 2.75m)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범위를 초과한 것임

질의·회신 사례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대수 변경 범위(2026.2.24. 회신)

- **(질의)** 건축계획 변경으로 주차대수가 500대에서 450대로 변경되는데, 변경신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인지?
- **(회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시설물의 계획 변경으로 주차대수가 변경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4] 제1호 다. 주차 항목을 살펴보아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대수의 10% 이하 증가 및 5% 이하 제거 시에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에 해당됩니다.
 - 또한, 같은 목 기타란에는 “다만, 대상사업 규모 증감 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는 제거 가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건축물이 당초 사업규모 대비 변경하는 사업규모에 대한 증감 비율만큼,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 비율만큼까지의 주차비율 감소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내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획주차대수는 당초 500면→450면으로 10% 감소하여 변경허용 인정범위인 5%를 초과하였으나, 사업계획(규모)의 감소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라면 교통개선대책 변경허용 인정범위 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그럼에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증감에 따른 주차동선체계의 변화 및 새로운 교차지점 발생여부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심의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승인관청과 협의하여 변경 절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사례

공동주택 내 공공보행통로의 변경(2025.12.1. 회신)

- **(질의)** 공동주택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공간의 폭원이 축소할 경우, 지침 시행령 별표 4 마. 보행 및 자전거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항목의 폭원 축소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4 제1호마목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살펴보면, 보행관련 항목에는 보도설치, 보도확폭, 보행동선체계, 횡단보도 신설,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공공보행통로는 보행동선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을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지침」 3-6-10.(6)에 따르면 “보행동선계획 수립 시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면서, 불가피할 때 지정하는 통로”를 의미하며,
 - 보도는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 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 중 하나를,
 -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라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 위 정의를 참고하여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4 제1호마목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살펴보면,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는 법 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공공보행통로는 보행동선체계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질의와 같이 공공보행통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보행동선체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절불가”가 아니라면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공간은 다양한 경우가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승인관청에 문의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이행의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4조에서 사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지침 제29조제2항의 변경신고 대상

1. 교통개선대책 변경허용 인정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 지변이 발생하거나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5.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6.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를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7.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질의·회신 사례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변경심의 여부(2026.2.24. 회신)

- **(질의)**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현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1)다른 사업의 변경사항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그 변경이 교통개선대책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등으로 변경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이 준공 전으로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승인관청과 협의하여 변경절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1.4 변경신고서의 작성

- 변경신고 보고서는 지침 별표 6에서 정한 내용항목에 따라 작성(지침 제30조제1항)

참고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6] 변경신고 보고서 작성

1. 최초 심의결과 요약
 - 가. 사업의 개요
 -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 다.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신고 사유 및 근거(내용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변경신고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내용
4. 참고자료(필요 시 첨부)

2.1.5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의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는 해당 사업의 승인관청(부서)에 제출하고, 승인관청은 신고내용이 변경심의 대상은 아닌지 검토한 뒤 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검토 결과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심의 절차를 안내하거나, 변경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범위가 경미한 경우라면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임

2.2 사업준공 이후

2.2.1 변경심의 대상

- 개발사업 및 건축물 모두 해당(영 별표 1 비고 제5호)

사업 종류	심의 대상(준공 전·후 모두 포함)	비고 (관련 조문)
개발사업 및 건축물	• 준공된 사업면적(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30% 초과	5-가-1) 5-가-5)
개발사업 및 건축물	• 확장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 증가	5-가-1) 5-가-5)
항만	• 연간 하역능력의 30% 초과 증가	5-가-2)
철도 (도시철도)	• 기존 노선에 정거장 추가 / 기존 노선을 복선화 / • 기존 정거장의 건축연면적 30% 초과 증축	5-가-3)
도로	•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도로면적 합계 30% 초과 증가 • 단, 도로폭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생기는 교차로는 합산 제외	5-가-4)
건축물	• 용도변경 시 변경된 용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따름	5-나

질의·회신 사례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변경(2026.3.14. 회신)

- **(질의)**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운영중인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교차로 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사항 가목 1)에 따라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또는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해당 문의를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해당 사업구역 내의 교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업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라면 교통영향평가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지자체로 이관되어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중에 있는 상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도시의 개발 8)에 따라 해당 교차로 변경 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부지면적 10만㎡ 이상)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는 무관하게 경찰청의 규제심이나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에 따른 변경인 경우라면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및 추진 절차에 따라 교차로 운영방법 변경을 추진하시면 될 것으로 이 경우는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2.2 변경신고 대상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시설물(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인 이행의무 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법 제24조의2제1항)
 -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24조의2 제2항)

참 고

개발사업의 준공 후 변경신고

- 개발사업은 준공 이후 변경 시 변경심의 대상이 아닌 이상 변경신고를 따로 하지 않음 (변경신고 규정이 없음)

- 승인관청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아래의 사후변경 수리 기준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24조의2제3항)

사후변경 수리 기준(지침 제34조제1항)

1.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3.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9.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
10.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지침 제34조제2항)

질의·회신 사례

신고절차 간소화의 의미(2025.3.7. 회신)

- **(질의)**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제2항의 신고절차 간소화의 의미
- **(회신)** 신고절차 간소화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사유에 대한 평가대행업체의 별도 검토보고서가 필요없이 변경신고서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사후변경 내용에 대한 신고절차의 간소화 대상여부 및 사후변경 적합여부,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가의 자문 필요여부 등에 대해서는 승인관청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승인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V 장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

1.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
2.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조치



1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

1.1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등록(사업자)

-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면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tia.molit.go.kr)에 등록하여야 함(법 제27조제1항제4호)
 - * 교통영향평가서 등은 실무상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등록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정확한 자료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교통영향평가정보시스템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함. 등록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신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10년까지 보존할 것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됨

1.2 사후관리 의무(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2.1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의무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의2제1항)

참고

시설물의 개념

-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構築物)을 의미(법 제2조제6호)하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건축물을 뜻함.
 - “건축물”이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건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영 제3조)

- 법령에는 시설물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데, 사업계획이나 개발 사업은 준공 이후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관련 시설물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공 이후는 더 이상 ‘사업의 관리’가 아닌 ‘도시교통의 관리’의 영역으로 보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 사후관리 규정 시행일(2016.1.25.) 이전 준공된 시설물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됨

법제처 법령해석 17-0087(2017.3.27.)

- **(질의)**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전단),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 **(회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1.2.2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의 변경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24조의2제2항)

참 고

변경신고서의 접수 기관

- 준공된 시설물의 변경 시 변경신고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부서)이 아닌,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부서)에 하여야 함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조의11제1항)
 -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란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사진 등을 말하며, 변경신고서 작성 시 변경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해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한 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할 것임
- ※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서식 7의2

질의·회신 사례

변경신고서 작성에 대한 대행 의무 여부(2025.12.8. 회신)

- **(질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준공된 건축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회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제1항에서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변경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뒤 준공 전에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변경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 경우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므로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작성하도록 해석하여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1.2.3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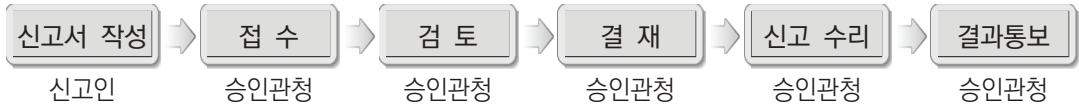
- 차량, 보행자 등의 동선을 포함하는 시설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의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

준공 시설물의 변경신고와 ‘교통개선대책 변경허용 인정범위’와의 관계

- 지침 별표 4에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준공 이전의 건축물 및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신고 범위로서, 준공 이후 건축물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와 무관함

- 변경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음



1.2.4 사후변경 수리 기준

- 승인관청은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수리하여야 하며(지침 제34조 제1항),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아래 기준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24조의2제3항)

변경신고 수리기준(지침 제34조제1항)

1.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3.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9.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
10.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법 제24조의2 제4항)

참 고

공동주택의 사후 변경신고 시 신고절차 간소화

- 승인관청은 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지침 제34 조제2항)
 -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내부 교통시설 변경 등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 여부, 관련 법령 적합 여부 등 적법성 검토 외에는 가급적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자문 등 불필요한 검증 절차 지양)
 - 다만, 외부 교통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출입구 교통처리계획, 대규모 주차규모 조정은 일반적인 사후변경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

2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조치

-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VI 장

기타 사항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1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1)

1.1.1 일반요건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 기술자를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다음의 사람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음. 다만, 제2호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음
 - ①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②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시행규칙 별표1)

1.1.2 세부요건

가. 책임자급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 ① 영 별표2 제1호 기술자격자란 가목 또는 같은 호 학력자·경력자란 5)의 특급교통영향평가기술자
 -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보조자급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할 것

1.1.3 결격사유(법 제26조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음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법인의 대표자가 ①에 해당하는 법인
 - ⑤ 임원 중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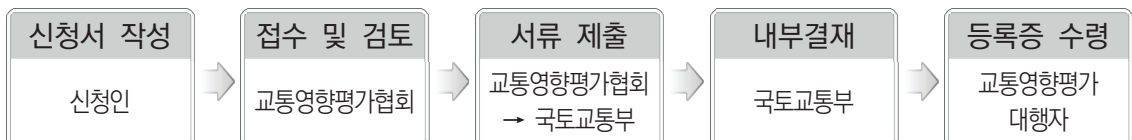
1.2 등록(변경등록) 방법

1.2.1 등록(변경등록) 대상

- 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신규 등록
- 나. 명칭 및 상호 변경
- 다.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라. 소재지 변경
- 마. 기술인력 변경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완료된 경우만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
- 기존에 기술자 인정을 받은 경우 전 근무처에서 퇴사신청이 들어와야 신규신청 가능

1.2.2 등록(변경등록) 절차



- 업무 처리 기간 : 신규등록은 접수 후 20일 이내, 변경등록은 접수 후 7일 이내

1.2.3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이메일 : katia@katia.or.kr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https://tia.molit.go.kr>

나. 작성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교통영향평가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ia.or.kr>)’의 ‘협회업무’ > ‘공지사항’ >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인정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위탁업무 안내’ 게시글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다.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가. 신규등록	☐ 신청서(별지8호 서식)	신청인은 대표자를 뜻하며, 서명란에 대표자와 대행자 직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1] 대표자 및 등기임원 인적사항	결격사유 판단
	☐ [양식6] 대표자 및 등기임원 행정정보공개동의서	
	☐ [양식2]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기술자 증명서 발급받은 인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양식2] 해당인원 전원 - 이중취업 확인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가업무 사무소가 주사무소와 다른 경우 제출
나. 명칭 및 상호 변경	☐ 신청서(별지8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평가대행자등록증(원본)	우편으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다.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신청서(별지8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4] 대표자 및 등기임원 인적사항	결격사유 판단
	☐ [양식6] 대표자 및 등기임원 행정정보공개동의서	
	☐ 평가대행자등록증(원본)	우편으로 제출
라. 소재지 변경	☐ 신청서(별지8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평가대행자등록증(원본)	우편으로 제출
마. 기술인력 변경	☐ 신청서(별지8호 서식)	
	☐ [양식5]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기술자 증명서 발급받은 인원
	☐ 해지 기술인력 : 4대보험 증명서 중 택일	해당자 상실 날짜 증빙서류
	☐ 신규 기술인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하며, pdf로 제출

| 가.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등록 20 일 변경 7 일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대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규등록 정도로만 간략히 기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제1항 및 제2조

의14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 등록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대행자명으로 기재 (서명 또는 인)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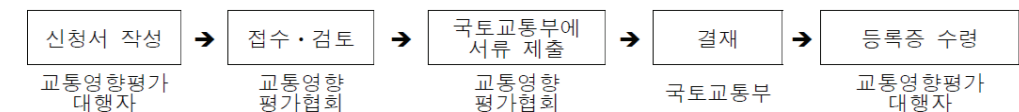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교통영향평가협회 담당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공이용	없음

행정정보 공공이용 동의서

본인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나.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등록 20 일 변경 7 일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대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변경신청이 2가지 이상일 경우도 신청서는 1장만 제출

변경내용 및 사유에 간단히 기재바람,

예) 기술인력과 대표자 변경 신청, 기술인력 변경신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제1항 및 제2조

의14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대행자명으로 기재** (서명 또는 인)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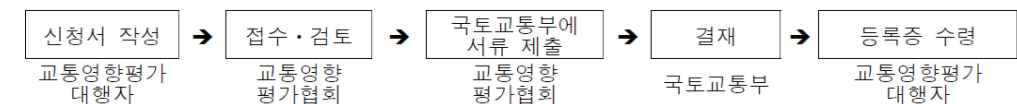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교통영향평가협회 담당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통이용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1.3 폐업신고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시행규칙 서식10)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함(시행규칙 제2조의19제2항)

1.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등(법 제29조)

1.4.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6개월 이내)

- ①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③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④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참 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법 제27호제2항)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1.4.2 등록취소 대상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②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참 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법 제26조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④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별표 2])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23조제6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이 별표에서 “대행업무”라 한다)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4호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마.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의14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5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9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사.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7호				
1)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다만, 제2조의18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1.4.4 행정처분 시 업무의 계속 등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봄(법 제3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의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법 제31조)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

2.1 자격인정제도의 도입

-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고도화·전문화되면서 관련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경력 등을 명확히 하고, 책임있는 전문가를 지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 개정을 통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가 도입되었고, 기술자 등급 구분 및 교육훈련 제도가 함께 마련되면서('22.12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영향평가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음

2.2 인정기준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분류되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일정한 자격·경력·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교통 전문가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
- 각 등급별로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영 [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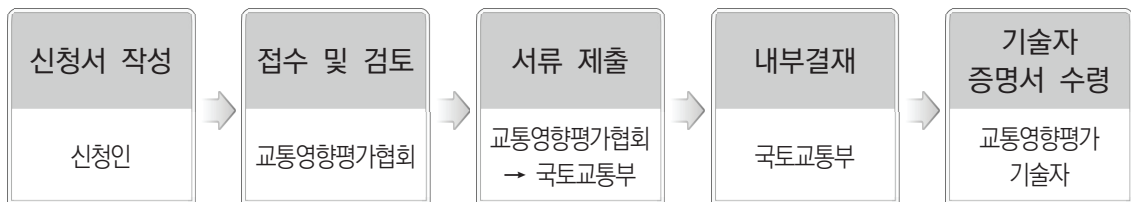
기술자격자	학력자·경력자
1.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가.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자격자	학력자 · 경력자
2. 고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 고 1. 등급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자격자란 또는 학력자 · 경력자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3. 위 표에서 “관련 학과의 학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로 한다.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위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
4. 위 표에서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자격 취득 또는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가. 교통영향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나. 국토교통부,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검토·심의에 관한 업무
 - 2)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검토에 관한 업무
 - 2)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 3) 교통영향평가 관련 연구 업무
5.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인정(변경) 신청

2.3.1 인정(변경) 절차



- 업무처리기간 : 신규등록은 접수 후 20일 이내, 변경등록은 접수 후 7일 이내

2.3.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교통영향평가협회 이메일(katia@katia.or.kr)

나. 제출서류 목록(시행규칙 [서식] 참조)

신청종류	제출서류	
	기술자격	학력자·경력자
인정신청	신청서(서식 11호)	
	증명사진(3.5cm*4.5cm)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관련 학력자는 졸업/성적증명서 필수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서식11의9)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서식11의9)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서식11의2) * 경력사항 신고시 필요	
변경신청	인정 변경신청서(서식11의4)	
	인정 변경신청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경력증빙용)	

- 제출서류는 ‘교통영향평가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ia.or.kr)의 ‘협회업무’ > ‘공지사항’ > ‘교통영향평가 기술자 인정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위탁업무 안내’ 게시글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인정신청서 작성 예시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3.5cm×4.5cm)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근무처	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입사일		
경력기간	년 월			기술자신청등급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학력자·경력자일 경우 관련 학과의 학위 기재		
	. . . ~ . . .						
	. . . ~ . . .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3. 법치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서류증 1부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인정 신청을 위하여 해당 서류가 필요한 사람이 제출합니다.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교통영향평가협회 담당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통이용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협회 공시사항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조치의 공동이용 제한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2.4 인정취소 대상 등(법 제32조의3)

2.4.1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대상(3년 이내)

-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 ②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 ⑤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 ⑥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 ⑦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 자료를 작성한 경우

2.4.2 인정취소 대상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 ②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 ③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2.4.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별표 2의2])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인정취소인 경우(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인정정지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1호	인정취소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2호	인정취소			
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3호	인정정지	인정정지	인정정지	인정정지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4호	경고	인정정지 1개월	인정정지 3개월	인정정지 6개월
마.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5호	인정취소			
바.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6호	인정정지 3개월	인정정지 6개월	인정정지 9개월	인정정지 1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7호	인정정지 6개월	인정정지 12개월	인정정지 18개월	인정정지 24개월
아.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8호	인정정지 6개월	인정정지 12개월	인정정지 18개월	인정정지 24개월
자.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9호	인정정지	인정정지	인정정지	인정정지
차.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 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 제32조의3 제1항제10호	인정정지 6개월	인정취소		

비고

1. 다목의 행정처분 기준란의 인정정지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자목의 행정처분 기준란의 인정정지는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2.4.4 인정취소의 계속기간 및 공개 등

- 사업자 또는 승인관청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고, 자격·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그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될 수 없음

2.5 법정 의무교육

2.5.1 의무교육의 근거와 교육훈련기관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법 제32조의4제1항)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법 제32조의4제2항), 현재는 교통영향평가협회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50호)

2.5.2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영 별표2의2)

구분	최 초 교 육		계 속 교 육
목적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내용	기술자 윤리교육, 교통공학, 도로 계획 및 설계, 주차장 계획 및 설계, 교통영향 평가 관련 법령·제도,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무 관련 내용		
방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		
대상	특급 기술자	고·중·초급 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시간	40시간	35시간	20시간
이수 시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 6개월 이내

2.5.3 등급별 교육 운영사항 안내

①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가. 교육대상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나. 최초교육 시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특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다. 교육 프로세스

- 신청 → 이러닝교육(31시간), 집체교육(1일, 8시간) → 시험 → 수료(총 40시간 교육)
- 교육은 4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이러닝교육 및 집체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라. 수료 조건

- 전체 학습진도율 90% 이상 시 시험(학습평가) 응시가 가능하며, 학습진도율(20점)과 시험(80점)의 합산 점수가 총 7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 수료 점수 미충족자는 수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가능

마. 승급 시 교육 수료

-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승급한 경우 승급교육이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만 받으면 됨

바. 교육 신청 절차 등

- 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s://www.edukatia.or.kr>) 접속 및 로그인 → 교육신청 → 교육비 납부
- 교육기간 내 이러닝 교육 및 집체교육(1일) 참석(집체교육시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 등록)

② 고급/중급/초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가. 교육대상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고급/중급/초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나. 최초교육 시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고급/중급/초급)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다. 교육 프로세스

- 신청 → 이러닝교육(26시간), 집체교육(1일, 8시간) → 시험 → 수료(총 35시간 교육)

- 교육은 4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이러닝교육 및 집체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라. 수료 조건

- 전체 학습진도율 90% 이상 시 시험(학습평가) 응시가 가능하며, 학습진도율(20점)과 시험(80점)의 합산 점수가 총 7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 수료 점수 미충족자는 수강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가능

마. 승급 시 교육 수료

-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승급한 경우 승급교육이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계속교육만 받으면 됨

바. 교육 신청 절차 등

- 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s://www.edukatia.or.kr>) 접속 및 로그인 → 교육신청 → 교육비 납부
- 교육기간 내 이러닝 교육 및 집체교육(1일) 참석(집체교육시 신분증 지참하여 교육 등록)

교통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발행일 | 2026년 4월

발행처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044-201-3812)

인쇄처 | (주)취문인쇄

발행에 참여한 분들

〈자문위원〉

경기대학교 오승훈 교수

서경대학교 모무기 교수

동아대학교 김희경 교수

전남대학교 박제진 교수

교통영향평가협회 김원진 회장

서울특별시 김종민 기후동행수요관리팀장

〈대한교통학회〉

유정훈 회장, 이동민 수석부회장

〈대한교통학회 교통엔지니어링발전위원회〉

김진한 위원장, 하희동 부위원장, 원동환, 김은경, 신흥근, 염진배,
허태현, 김유찬, 이승준, 조주명, 정현정, 권순실, 류기종

교통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